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20.3.12.(목) 15:00

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상식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6일

3. 제안 이유

○ 도내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향 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·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 (안 제7조)
- 다. 미래자동차산업 지원사업에 출자·출연·보조·융자 등(안 제8조)
- 라.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'은 도내에서 자동차부

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 그리고 제정 절차 등은 적절하여조례 제정은 타당함.